

#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

2010. 10. 11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0. 10. 8
- 나. 발 의 자 : 이한구 의원, 이재병 의원(찬성자 36인)
- 다. 회부일자 : 2010. 10. 8
- 라. 상정일자 : 2010. 10. 11(제1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이재병 의원
  - 검토보고 : 김중진 전문위원
  - 질의 및 토론
  -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, 저소득층 초·중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을 헌법의 취지를 살리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함.
-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,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.

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지역 친환경 식자재 생산 확대와 유통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, 농민 보호가 필요함.
- 친환경 무상급식 준비와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, 산업위원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12개월  
  - ※단,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
- 구성인원 : 10인 이내
- 활동범위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민관협력기구 활동 지원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예산확보 방안 모색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지역 생산기반 조성 지원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지역 유통시스템 조성 지원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식자재 검증시스템 조성 지원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관련 조례 제정 등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, 저소득층 초·중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

-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
- 지역 친환경 식자재 생산 확대와 유통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, 농민 보호가 필요함이 대두됨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음

#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**

- 해당사항없음

#### **5. 토론요지**

- 가. 찬 성 : 전원기, 이재병, 노현경, 신동수, 신현환, 안영수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#### **6. 심사결과**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 : 6명)

#### **7. 소수의견 요지**

- 해당사항없음

#### **8. 기타 사항**

- 해당사항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부. 끝

#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## 1. 주 문
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『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함.

## 2. 제안이유

-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, 저소득층 초·중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을 헌법의 취지를 살리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함.
-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,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.
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지역 친환경 식자재 생산 확대와 유통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, 농민 보호가 필요함.
- 친환경 무상급식 준비와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, 산업위원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함.

### 3. 구성개요
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12개월
  - ※단,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
- 구성인원 : 10인 이내
- 활동범위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민관협력기구 활동 지원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예산확보 방안 모색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지역 생산기반 조성 지원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지역 유통시스템 조성 지원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식자재 검증시스템 조성 지원
 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관련 조례 제정 등

### 4. 세부활동계획

- 특별위원회에서 수립·의결

### 5. 관련규정

- 헌법 제31조
- 지방자치법 제56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